

제55차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본회의 논의 동향

법무부 국제법무과 사무관 최승은·임세영

I. 회의 개요

지난 2022.6.27.~7.15. 동안 뉴욕 유엔본부에서 제55차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 본회의(Commission)가 대면과 화상회의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최되었다.

58개 회원국 및 옵서버 국가, 국제상공회의소(ICC), 유럽연합(EU)과 같은 관련 기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각 분과별 활동 보고 및 결과물(규범문서)의 완성·채택, 유관기구와의 협력사업 진행 경과 및 성과, 사무국의 비입법적 활동 성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II. 채택 문서

이번 본회의 후 선박경매의 국제적 효력에 관한 UN 협약(제6분과), 신원관리 및 신뢰서비스 이용과 국경간 승인에 관한 모델법(제4분과), UNCITRAL 조정규칙 권고

안(제2분과)을 최종 채택하기로 결의하였다. 채택문서 별 상세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선박경매의 국제적 효력에 관한 UN협약 문안 완성

가. 논의 경과

2018년 제51차 UNCITRAL 본회의가 제6분과 의제로 선박경매(Judicial Sale of Ships)를 채택한 이후 2019년 제35차 회의에서부터 2022년 제40차 회의에 이르기까지 해당 의제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그 문안이 완성되어 최종 채택을 앞두고 있었다.

나. 주요 내용

○ 제1조 목적

“effects of a judicial sale of ship” 앞에 ‘international’ 삽입하자는 제안(중국)에 관

하여 i) 협약의 표제(title)와 표현을 통일하고, 본 협약이 선박경매의 국제적 측면만을 다루고 국내 문제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하는 견해, ii) 본 협약이 선박경매의 효력을 다루는 데 국제적 효력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일부 조항은 국내적 효력의 측면도 가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반대하는 견해로 분과 내 의견들이 나뉘었다.

논의 결과 중국의 제안을 받아들여 문안을 수정하되, 이러한 수정으로 인해 본 협약이 이른바 국내 사건(domestic cases)에 적용될 수 없는 것은 아님을 별도로 주석서에 명시하기로 하였다.

○ 제2조 정의

(a)호의 ‘judicial sale’과 관련하여 (i)의 ‘public auction’ 외에 ‘public tender’를 추가하여야 한다는 제안(중국)이 있었으나, 채택되지 않았다. 이 문제는 제2조 (a)호에 관한 주석에 ‘public auction(경매)’에 ‘public tender(경쟁 입찰)’ 방식에 따른 매각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해결하기로 결정되었다.

또한 제2조에 ‘선박경매의 완료(completion of judicial sale)’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정의 규정을 두자는 제안(독일, 프랑스)이 있었다.

“Completion of a judicial sale” means that the judicial sale of a ship is not subject to a review in the State of judicial sale and that, according to the law of that State, the time limit for seeking ordinary review has expired.

이에 대해 i) 선박경매의 완료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지 않을 경우 선박경매증서 발급과 관련한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에 찬성하는 견해도 있었으나, ii) 제6분과의 논의 과정에서 이미 선박경매 완료에 관하여는 정의 규정을 두지 않고 선박 경매국의 국내법령에 맡기기로 한 점, 이는 실질적으로는 통일 규정을 두려는 것이 아니라 선박 경매국이 언제 선박경매증서를 발급할 것인지 여부를 정하려는 목적에서 제기된 점, 제안된 문구는 2019년 헤이그 재판협약(the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ement in Civil or Commercial Matters) 제4조 제4항을 기초로 한 것인데 선박경매는 본안 재판과 구별되는 집행의 문제라는 점에서 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반대하는 견해가 우위에 있어 결국 위 제안은 수용되지 않았다.

○ 제3조 적용범위

제3조 제1항은 시제를 현재형으로 변경하고, ‘당해’ 선박경매가 실시된 국가임을 명시하게 위해 ‘that’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1. This Convention applies only to a judicial sale of a ship if:
- (a) The judicial sale is conducted in a State Party; and
 - (b) The ship is physically within the territory of the State of judicial sale at the time of that sale.

선박경매절차는 선박 경매국의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규정을 선박경매의 통지를 표제로 하는 제4조 제1항에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제4조 제1항 대신 제3조 제1항 (b)호 말미에 “as determined by the law of the State of judicial sale”을 추가하여 선박경매 시점이 선박 경매국의 법령에 따라 정해진다는 점을 규정하자는 제안(독일)이 있었으나, 논의 결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제4조 선박경매의 통지

선박경매의 통지가 선박경매가 시행되기 전 상당한 기간을 두고(in due time) 이루어져야 하고, 단순히 ‘prior to the judicial

sale of the ship’이라고만 하면 선박경매절차 개시 시점을 통상 선박경매 통지가 발송되기 이전의 초기 단계로 해석할 경우 문제가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제안(독일)이 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3항 내지 제7항은 독립적인 의무 규정이라기보다는 제5조에 따른 선박경매증서를 발급하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므로, 제2항의 종속 항목으로 두자는 제안(미국)이 있었지만 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하였다.

선박경매를 통지하여야 할 대상과 관련하여 선박 기국의 대사관/영사관을 추가하자는 제안(튀르키예)이 있었으나, i) 통지의 수령은 일반적으로 외교공관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ii) 협약에서는 최소한의 필요 요건만 규정하고 추가적인 통지 대상은 각국의 법령에서 자유롭게 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에서 채택되지 못하였다.

제6항의 언어 요건과 관련하여 서두에 ‘For the purpose of communicate the notice to the repository’를 추가하여 해당 요건이 IMO 등록기관(Repository)과 관련된 것임을 명확히 하자는 제안(EU)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위 조항의 언어 요건이 i) 통지 전반에 관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ii) IMO repository에 대한 통지에만 해당하

는 것인지에 관하여 각국 간의 이해가 다른 점이 확인되었다. 이 조항이 마련된 것은 IMO가 repository 역할을 수락함에 있어 IMO의 공식 언어가 아닌 언어로 된 통지를 수령함으로써 추가적인 비용이나 부담을 질 수는 없다는 배경에서 출발하였으므로, EU의 제안을 받아들여 위 문구를 추가하기로 하되, 주석서에서 제6항의 repository에 대한 통지를 번역할 필요가 있음을 환기하면서 제3항에 따른 통지 시에도 최소한의 정보를 번역하도록 권고하였다.

제7항의 ‘exclusively’라는 문구가 자칫 통지를 발송함에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를 삭제하자는 제안(독일)이 있었었다. 그러나 다수의 지지를 얻지는 못했다. 다만, ‘reliance may exclusively be place on’을 ‘it is sufficient to rely on’으로 표현을 수정하자는 제안이 있어 이에 따라 문안을 변경하였다.

○ 제5조 선박경매증서

제2항 (e)호의 ‘the court or other public authority that conducted the judicial sale’이라는 표현과 관련하여 Appendix I과 Appendix II에서는 ‘conduct’라는 표현 대신 ‘ordering, approving or confirming’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양자를 정합성 있게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있

었다. 이에 대하여는 양자가 서로 다른 시점, 즉 i) 통지 발송 시점과 ii) 경매가 완료된 시점을 상정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선박경매를 실시하는 기관과 선박경매를 명령, 승인 내지 확인하는 기관이 다를 수 있다는 설명이 있었다. 이에 따라 (e)호는 그대로 ‘conducted’를 쓰기로 하고, 이에 맞춰서 제1항과 Appendix II의 3.1의 ‘the court or other public authority that ordered, approved or confirmed the judicial sale’도 ‘conducted’로 수정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 제7조 등기소의 조치

제1항의 ‘or subsequent purchase’부분과 관련하여 i) 해당 부분을 삭제하자는 제안(ICLRC)과 ii) 전득자와 관련하여서는 ‘or at the request of the subsequent purchaser and upon the production of the certificate and further documentation on the transfer of ownership from the purchaser to the subsequent purchaser’를 추가하여 전득자로 하여금 자신이 해당 선박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건으로 추가하여야 한다는 제안(EU)이 제출되었다.

i) 전득자가 자신이 전득자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ii) 등기소로서는 ‘해당 기관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in ac-

cordance with its regulations and procedures)’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iii) 등기가 소유권 취득의 요건인 국가도 있고, 본 협약이 선박의 소유권에 관하여는 다루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입장이 지배적이어서 위 제안은 채택되지 못하였다. 대신 이러한 내용은 사무국이 주석서에 보다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술하는 방향으로 정리되었다.

- 제9조 선박경매 취소 및 효력정지의 관할/제10조 선박경매가 국제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 경우 관련

선박 경매를 실시하는 국가로 하여금 선박경매의 효력을 다룰 적절한 구제수단을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특히 EU는 채권자들이 권리행사를 할 기회를 보장받을 정당한 이익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조항의 신설이 제안되었다.

“The state of judicial sale shall provide adequate procedural remedies to challenge a judicial sale before its completion under the law of the judicial sale.”

이에 대하여는 i) 구제수단의 적절성(adequacy)이라는 개념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ii) 본 협약이 선박경매의 절차에 관한

문제를 각국의 국내법령에 맡기고 있는 태도와도 부합하지 않으며, iii) 약의의 채권자가 정당한 경매절차의 효력을 부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iv) 당초 제9조와 제10조에서 선박경매의 유효성 문제는 ‘public policy’ 위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 경매국에서 전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정하였는데, 위와 같은 조항을 도입함으로써 우회하여 선박경매를 다투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반대하는 장이 지배적이었다. 결국 informal consultation을 거친 끝에 위 문제는 제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The judicial sale shall b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law of the State of judicial sale, which shall also provide the procedures for challenging the judicial sale prior to its completion and determine the time of the sale for the purposes of the Convention.

이와 관련하여 위 조항이 협약에 가입하려는 국가들에게 선박경매절차에 선박경매를 다투는 새로운 구제절차를 추가적으로 도입하거나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 법제도 하의 구제절차를 적절히 운용하는 것으로 족하다는 취지임을

주석서에 명시하기로 하였다.

○ 제13조 다른 국제협약과의 관계 관련

제13조 제2항을 아예 삭제하자는 제안(HccH)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다만 사무국이 주석서에 선탁경매의 통지를 1965년 헤이그 송달협약(the Convention on the Service Abroad of Judicial and Extrajudicial Documents in Civil or Commercial Matter)에서 정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회원국의 국내법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기로 하였다.

○ 제17조 서명, 비준, 수락 및 승인

중국 정부 측은 본 협약이 채택될 경우 베이징에서 서명식을 개최하고 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으며, 본 협약의 약칭을 ‘베이징 협약(Beijing Convention)’으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수의 국가들이 중국의 제안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Covid-19 상황에 따라 서명식에 참가하는 각국 대표들의 베이징 방문 가능성, 격리 등 방역조치 실시 수준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베이징에서 서명식을 개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서명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실제 서명식 개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므로, 현재로서는 중국의 제안을 받아들여 서명식

은 베이징에서 하되 날짜는 공란으로 남겨두기로 하였다.

○ 제20조 선탁경매증서의 인증

본조는 본 협약 제5조 제4항이 선탁경매증서에 일체의 공증(legalization) 및 형식(formality)을 요구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 1961년 아포스티유 협약(the 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s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s) 회원국의 경우 이를 통해 선탁경매증서의 진정성을 확인하려는 의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견지에서 일종의 타협안으로 새로 제안된 것이다.

아포스티유 협약이 널리 받아들여진 협약이고 아포스티유 발급에 대단한 노력과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도입에 찬성하는 견해도 있었으나, i) 이러한 경우 아포스티유 협약 회원국이 비회원국보다 선탁경매증서 발급에 더 번거로운 절차를 요구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ii) 아포스티유가 선탁경매증서의 진정성을 담보하는 것도 아니고, 진정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수단(ex. 발급국가의 권한 당국에 질의, Repository 조회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iii)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되는 선탁경매증서에는 아포스티유 협약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본 조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다수를 차지하여

결국 본 조항은 삭제하기로 결정되었다.

○ 제21조 유보의 절차 및 효과

제21조는 본 조항뿐만 아니라 각 유보조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절차와 효과를 통합하여 규정하기 위하여 새로이 제안된 것이다.

제3항 후문(However, a declaration of which the depositary receives formal notification after such entry into force take effect 180 days after the date of its receipt by the depositary.)은, 제1항에서 유보 선언은 해당 국가에 협약이 발효하기 이전에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과 모순되므로 삭제하자는 제안(캐나다)에 따라 제3항 후문은 삭제되었다.

제4항은 연방국가들의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다.

If the depositary receives the notification of modification or withdrawal before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in respect of the State concerned, the modification or withdrawal shall take effect simultaneously with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in respect of that State.

○ 제22조 발효

본 협약은 선박경매를 실시하는 국가와 선박이 등록된 국가에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만으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3개국 이상으로 엄격한 발효 요건을 두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제3항에서 ‘conducted’는 협약의 적용대상을 확정하는 데 불충분한 단어이므로, 이를 경매 개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 ‘ordered or approved’로 수정하기로 하였다.

○ 전문

전문은 선박경매의 결과 ‘clean title’을 취득하기만 하면 집행권원이 maritime claim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본 협약이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종 수정되었다. 법제에 따라서는 선박경매가 권리의 실현 외에 담보를 위해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으나, 전문이 지나치게 장황해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이에 따른 수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신원관리 및 신뢰서비스 이용과 국경간 승인에 관한 모델법(제4분과)

가. 논의 경과

2016년 제49차 UNCITRAL 본회의가 제

4분과 의제로 신원관리 및 신뢰서비스 (Identity Management and Trust Service)를 채택하였고, 이에 따라 제4분과는 2016년 제55차 회의에서부터 2022년 제63차 회의에 이르기까지 해당 의제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나. 주요 내용

○ 제6조 신원관리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제6조(d)와 제14조 제1항(c)의 ‘subscribers and third parties’를 ‘subscribers, relying parties and other third parties’로 수정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기로 하였다.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의 강행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자는 제안이 있었으나, 채택되지는 않았다.

○ 제9조 신원관리 사용자의 신원

제9조와 제10조가 적절히 연결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제9조의 ‘method’ 앞에 ‘reliable’을 추가하고, ‘electronic identification’ 앞에 ‘identity proofing’을 추가하자는 제안이 있었으나 ‘reliable method’라는 표현이 신뢰도에 관한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미국, 싱가포르는 신뢰도는

제10조에 의한 상대적 기준에 의해 평가되는 것에 분과의 합의가 있었으므로 조항 끝에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 paragraph 1’을 추가하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대해 일부 국가는 제10조 제1항은 신뢰도에 관한 사전적 평가(ex post)만을 규율하므로 사후적 평가(ex ante)를 규정한 제10조 제4항도 인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논의 결과, 제9조에 관하여 주요 의견 전부를 반영하기로 하였고 아래와 같이 수정하기로 합의하였다.

Subject to article 2, paragraph 3, where the law requires the identification of a person for a particular purpose, or provides consequences for the absence of identification, that requirement is met with respect to identity management services if a reliable metho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 paragraph 1, or article 10, paragraph 4, is used for the identity proofing and electronic identification of the person for that purpose.

신뢰서비스에 적용되는 제16조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정하여 본문 중에서 제22조 제1항 및 제4항을 인용하기로 하였다.

○ 제10조 신원관리 서비스의 신뢰성
요건

제10조 제1항(b)는 신원관리 서비스가 제9조의 기능적 요건을 충족해야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때 그 판단을 법원이 하는 것(by or before a court)으로 수정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이와 같이 ‘by or before a court’를 추가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판단 주체가 반드시 법원이 아닌 중재판정부일 수도 있고 일부 입법례에 따라서는 행정기관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by or before a court or competent adjudicative body’로 규정하여 법원 외 주체들도 포괄할 수 있도록 문안을 수정하였다.

최종 문안은 다음과 같다.

(b) Deemed to be as reliable as appropriate if proven in fact by or before a court or competent adjudicative body to have fulfilled the function described in article 9, by itself or together with further evidence.

○ 제14조 신뢰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제14조 제1항(c)와 관련하여 ‘relying party’도 operation rule 등을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subscribers and third parties’를 ‘subscribers, relying parties and other third parties’로 문안을 수정하였다.

○ 제22조 신뢰서비스의 신뢰성 요건

제22조 제1항(b)를 제10조 제1항(b)와 동일하게 수정(‘by or before a court or competent adjudicative body’를 추가)하는 제안에 대하여 싱가포르의 전자서명의 신뢰성 요건에 법원 등의 판단을 요구하는 것은 전자서명의 기능적 등가성을 규정한 UNCITRAL 전자상거래 협약(ECC) 제9조 제3항에 반한다는 이유로 반대하였다.

이에 대해 ECC 제9조 제3항은 전자서명과 자필서명이 기능적으로 등가함을 계약의 형식적 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신뢰서비스와는 맥락이 다르다는 의견, 모델법의 규정은 ECC와 상반되지 않으며 상호 보충 가능하다는 의견, UNCITRAL 규범 간의 정합성도 중요하지만 규범의 발전을 막을 수는 없고 모델법이 발전된 형태의 규범이라는 반론 등이 제기되었다.

논의 끝에 싱가포르의 반대의견은 채택되지 않았고 제22조도 제10조와 같이 원래 수정제안에 따라 변경되었다.

○ 제25조 전자 인증의 국경간 승인

제25조 제1항의 서두에 ‘the result of’를

추가하고, 제25조의 ‘reliability’를 전부 ‘assurance’로 대체하기로 하였으나, 국경간 승인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위해 ‘shall’을 ‘may’로 수정하여야 한다는 제안은 과도한 재량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협약의 법적 안정성을 해할 수 있다는 반론이 있음에 따라 채택되지 않았다.

제1항의 ‘최소한 동등한 수준의 신뢰성 (at least an equivalent level of assurance)’의 기준이 승인국보다 낮은 수준의 신뢰성을 승인하여야 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지적이 있었고, 대안으로 ‘a substantially equivalent or higher level’이 제시되었다.

논의 끝에 원안과 대안을 모두 규정에 추가하기로 하였고 아래와 같이 수정하였다.

1. The result of electronic identification provided outside [the enacting jurisdiction] shall have the same legal effect in [the enacting jurisdiction] as electronic identification provided in [the enacting jurisdiction] if the method used by the identity management system, identity management service or identity credential, as appropriate, offers:
 - (a) At least an equivalent level of assurance, where the assurance levels

recognized by such jurisdictions are identical; or

- (b) Substantially equivalent or higher level of assurance, in all other cases.

2. For the purposes of determining satisfaction of paragraph 1, regard shall be had to recognized international standards.
3. An identity management system, identity management service or identity credential shall be presumed to satisfy paragraph 1 if [the person, organ or authority specified by the enacting jurisdiction pursuant to article 11] has determined the equivalence, taking into account article 10, paragraph 2.

다만, 제25조는 상대적 기준에 불과하며 결국 기술에 관한 규범이 마련되어야 당사국이 타국의 기술을 승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고 여러 회원국이 공감을 표함에 따라 해당 지적을 해설서에 추가하기로 하였다.

3. UNCITRAL 조정규칙 관련 조정 기관 지원을 위한 권고안 완성 및 채택

가. 논의 경과

권고안은 제54차 UNCITRAL 본회의에서 채택된 개정 UNCITRAL 조정규칙(조정 의 UNCITRAL Conciliation Rules를 싱가포르조정협약과 국제상사조정에 관한 모델 법(2018년)의 내용을 반영한 것)과 관련하여, 조정규칙을 기관 차원에서 적용하는데 필요한 조치(조정절차 관리, 행정 및 송달 관련 편의 제공, 조정인 선정에 관한 노력)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나. 주요 내용

○ 조정규칙 제1조 제4항

조정인이 선정된 이후 당사자들이 조정 규칙을 변경하기 위해서 ‘조정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당사자 자치를 제한하는 규정이라는 지적이 있었음.

The parties may agree in writing, in consultation with the mediator where one has been appointed, to vary any provision of the [name of the institutional rule] at any time.

이에 따라 위 권고안 제1문과 제2문을 합쳐서 다음과 같은 수정문안이 제안되었다.

○ 조정규칙 제8조 제2항

싱가포르조정협약 제4조에서 화해합의 (Settlement Agreement)가 조정에 의해 도출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정기관 이 재량(may)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의무 (shall)를 부담한다고 명시할 것이 제안되었다.

III. 분과별 논의 동향

1. 제1분과(중소기업 신용공여)

지난 제36차 및 제37차 실무회의 결과 보고서가 이번 본회의에 제출되었으며 이 건 없이 채택되었다.

채택 과정에서 중규모기업 관련 내용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되 우선 소규모기업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자는 실무회의에서의 합의사항이 재확인되었다.

또한 향후 성안될 문서의 형식은 미정이지만 그 문서의 목적은 중소기업 신용 공여 관련 법제를 도입 또는 개선하고자 하는 국가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임이 강조되었다. 특히 태국 대표단은 이번 보고서의 채택을 지지하며,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펀딩(자금조달)의 중요성 및 관련 어려움 등을 설명하며 제1실무회의의 논의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2. 제2분과(분쟁해결)

지난 제74차 및 제75차(콜로키움) 회의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이견 없이 채택되었다.

제74차 회의의 성과로는 UNCITRAL 신속중재규칙 해설서 완성이 언급되었고, 제75차 회의와 관련하여 일본, 이스라엘, 스페인, 미국, 싱가포르 등 많은 대표단이 지난 콜로키움이 매우 유의미한 논의의 장이었다고 평가하며 결과보고서 채택을 지지하였다. 특히 제4분과의 논의 주제(전자상거래)와의 연관성 및 연계를 강조하는 의견도 있었다.

3. 제5분과(도산법제)

지난 제59차 및 제60차 회의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이견 없이 채택되었다.

제59차 회의에서는 「소규모기업을 위한 도산법 입법지침」의 주석(Commentary)에 대한 검토가 완료됨으로써 이 입법지침의 내용이 최종적으로 완성된 바¹⁾, 이번 본회의에서 이러한 성과가 다시 한번 조명되었다.

두 신규 의제(도산절차의 준거법 및 민

사적 자산 추적 및 회복)에 대해서는 주제의 복잡성과 난해함에도 불구하고 실무회의가 핵심 쟁점들을 추출하고 논의의 방향을 정립해나간 점이 높이 평가됨과 동시에, UNIDROIT와 같은 다른 국제기구와의 협업을 통해 작업의 중복을 피하고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 권고되었다.

지난 제60차 회의에서 검토가 완료되어 문안이 확정된 「국제도산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 사법적 관점」의 2차 개정본에 대해서는 캐나다, 브라질 등 다수 대표단들의 지지와 함께 발간 및 배포가 확정되었다.

IV. 향후 작업반 논의 계획(미래 의제 등)

진행 중인 작업이 곧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과(제4분과, 제6분과)들이 존재함에 따라 신규작업에 대한 예비조사 필요성 및 향후 작업계획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각 분과별 작업주제 외에 다양한 이슈들이 차기 작업주제 선정 및 논의의 시의성 등을 이유로 UNCITRAL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이번 본회의에서는 이러한 논의

1) 제54차 본회의에서 정해진 바와 같이 이 입법지침은 기존 「UNCITRAL 도산법 입법지침」 제5장으로 편입됨과 동시에 UNCITRAL 중소기업 시리즈(UNCITRAL MSMEs text series)의 하나로써 공개될 것임이 다시 한번 안내되었다.

동향 및 일정한 성과가 보고되었다. 특히 향후 논의 가능한 분과별 작업주제로서 특히 창고증권²⁾ 및 유통성 복합운송증권 관련 규범 성안이 검토되었으며, 제1분과 및 제6분과의 차기 주제로서 다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본회의를 통해 정해진 향후 논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 (제1실무회의) 중소기업 신용공여에 관한 논의 계속
- (제2실무회의) △조기기각 및 선결적 결정 관련 규정에 대한 지침 문안 마련, △기술 관련 분쟁 해결 및 재정 (Adjudication)에 대한 논의 작업 준비 (모델조항 등)
- (제3실무회의) 위임내용에 따라 ISDS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 계속
- (제4실무회의) △기준 UNCITRAL 규범 중 자동 계약체결(automated contracting) 관련 조항의 정리 및 적절한 개정, △보다 광범위한 쟁점 포섭을 위한 조항 마련(제63차 제4실무회의에서 정리된 내용 포함) 등의 단계적 수행
- (제5실무회의) 도산절차에서의 민사

적 자산 추적 및 회복, 도산절차의 준거법에 대한 논의 계속

- (제6실무회의) 유통가능한 복합운송증권에 대한 논의 착수

그 밖에 기후변화와 관련한 국제거래규범의 부재 및 불분명성 해소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팬데믹이 국제거래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을 지속할 것이 요청되었다.

V. 기타 활동 성과 보고

1. 유관기구와의 협력 활동

사무국은 UNIDROIT, HccH, 세계은행 등 다양한 유관 국제기구의 논의 동향 공유 및 공동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작업의 중복을 방지하고 논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 중임을 밝히고, 그 구체적인 협력 내용을 이번 본회의에 보고하였다.

이는 UNCITRAL이 총회(General Assembly)로부터 위임받은 활동 사항에 해당하며 국제거래법의 조화 및 통일화 과정에서 작업의 중복을 방지하고 효율성과 일관성, 지속성을 높여나가기 위한 것임이 언급되었다.

2) 현재 UNIDROIT에서 창고증권에 관한 모델법(안)을 마련 중이며, 해당 작업 완료 후 UNCITRAL 제1분과에서 신규 주제로 채택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각 기관별 협력 활동 현황은 다음과 같다.

- (UNIDROIT) 주로 담보계약 및 디지털 경제 등 다수의 주제에 관하여 협력해왔으며, △ 참고증권 관련 모델법 및 구체적인 입안 가이드에 대한 작업 계획(2020~2024), △ 기타 두 기구의 공통 관심 주제(디지털 자산과 private law에 관한 원칙, 농업기업의 법적 구조 등)에 관한 작업에 대해 공유함
- (HCCH) 디지털 경제 및 온라인 분쟁 해결과 관련한 법적 쟁점에 대해 UNCITRAL과 함께 논의 중
- (세계은행) 「효과적인 지급불능 및 채권·채무자 제도를 위한 원칙(World Bank Principles for Effective Insolvency and Creditor/Debtor Regimes)」의 개정(2021)과 관련한 협업 역시 주요한 성과로 언급되었는데, 특히 이 원칙은 UNCITRAL 도산규범 성안 과정에서 중요하게 언급·인용되는 내용임
-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OAS) 담보거래 지원 및 조정을 위한 공동 네트워크를 비롯하여 국제사법 분야의 발전과 관련 규범의 확산을 위해 다른 유관기구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각종 활동들을 공유함

－ 그 밖에 UN 내외부의 다양한 기관단체(UNCTAD, UNODC, OECD 및 WTO 등)등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협력 작업의 내용들이 이번 본회의에 보고됨

2. 다른 국제기구 문서 채택

본회의는 지금까지 ICC에서 성안해온 많은 규범문서들을 승인해왔으며, 2011년 제44차 본회의에서는 「청구보증통일규칙(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s: 2010년 개정본, 일명 URDG 758)」을 승인한 바 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URDG 758과 관련한 모범 실무 관행들을 취합하여 정리한 International Standard Demand Guarantee Practice(ISDGP)를 승인하였는데, 해당 문서는 관련 실무 현황 및 그동안의 발전 내용 등을 잘 반영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3. 사무국의 비입법적 활동 성과

직접적인 규범 성안 작업 외에 기존 UNCITRAL 문서의 채택 및 활용 증진을 위한 사무국의 다양한 활동성과(비입법적 활동)들이 보고되었다.

팬데믹 동안 UNCITRAL 규범에 대한 법제정비 및 역량강화 지원 수요가 상당히

높았으며, 이에 부응하여 많은 온라인 또는 하이브리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특히 UNCITRAL 아태지역사무소(RCAP)의 지난 1년간 활동 내용이 공유되었으며, 이에 우리 대표단은 RCAP 설립 10주년 축하와 아울러 아태지역 국가 대상 UNCITRAL 규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제안하고 우리 법무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였다.

CLOUT의 개선을 위해 인적 네트워크 구축, 시스템 정비 및 인터페이스 변경(기능 추가 등)와 같은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었으며, 이에 대해 사무국은 각 제안들에는 동의하나 예산이라는 현실적 한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4. 부대행사 등

이번 본회의에서는 △디지털 통상 규범을 주제로 하는 부대행사(Side Event)가 주 UN대한민국대표부, 법무부, UNCITRAL의 공동 주최로 진행되었고(7.7.), △회의 마지막 날(7.14.)에는 국제도산모델법 채택 25주년 기념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특히 디지털 통상 규범 관련 행사는 양자, 지역, 다자간 통상협상에 참여하는 관계자 간의 정보 교환, UNCITRAL 규범 텍스트가 WTO, DEPA와 같은 통상협정의 법적 토대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 탐색

을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Anna Joubin-Bret UNCITRAL 사무총장, Maria-Francesca Spatolisano(UN부사무총장), 배종인 차석대사(주UN대표부)가 환영사 및 개회사를 하였다. 이어 일본, 싱가포르, 칠레 등의 통상 담당 관료, UNCTAD, WTO, World Economic Forum(WEF) 등 관계자들이 디지털 경제의 트렌드, 디지털 통상 관련 협정 등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한국 대표단의 박정현 국제법무과장(법무부)이 “Where UNCITRAL encounters Digital Trade Agreements: Korea’s Experience”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